

강릉원주대학교 학칙 中 중요 학칙 알림

제 2 절 학적변동 및 관리

제59조(재입학)

- ①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희망할 때는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 재적하였던 학과(전공)의 동일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재입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재입학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재입학 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0조(휴학)

- ①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내에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면담을 거친 후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그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②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에게는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할 수 있다. <2022.12.26.>
- ③ 휴학기간은 통산 6학기(치의예과는 3학기), 계속하여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그 밖의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2조(자퇴)

- 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 확인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퇴원 제출 전 학과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면담을 받아야 한다.
- ② 징계의결 요구 중인 학생에게는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3조(제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2.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학생
 3.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4. 학사과정생의 경우 수강신청 취소 마감일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5. 제81조 제4항의 유급횟수를 초과한 학생
 6. 제80조에 따른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또는 합산 5회 받은 학생
 7.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학업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학생
- ② 제1항제6호의 경우 졸업학기에 받게 된 학사경고는 합산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입학생에게는 재입학 후의 학사경고 횟수를 적용한다.

제 4 절 시험 및 성적

제79조(학업성적)

① 학부과정의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고려한 상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A ⁺	A ⁰	B ⁺	B ⁰	C ⁺	C ⁰	D ⁺	D ⁰	F	P/S	N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없음	없음

② 학업성적의 상대평가기준과 평가 비율, P(pass)·N(non pass), S(success)로 평가하는 교과 및 비교과 교과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과목별 성적은 D0 등급 이상은 급제로 하고 F등급은 낙제로 한다.

④ 교과목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 할 수 있다. <2022.12.26.>

재이수 시 유의사항 수정 안내

-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생포함)은 이전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만 재이수 가능
 - ※ 재이수 교과목의 취득가능한 최대 학점은 A0 이하
-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재이수는 재학 중 교과목당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유급에 의한 재이수 및 필수 이수과목이 F학점인 경우는 예외
- * 2023. 1. 17. 해당 규정 재정 : 학사운영 규정 제66조(교과목 재이수)

⑤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 재이수에 관한 사항은 제81조(유급)에 따른다.

⑥ 수강승인을 받고 수강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F등급으로 처리된다.

제80조(학사경고)

- ① 매 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75에 미달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다만, 치의예과는 제외한다.
- ② 학생에게 제1항의 학사경고를 부과한 경우 이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1조(유급)

- ① 치의예과 학생은 전체 학년 성적평점평균이 2.0 미만인 경우 유급되며, 2학년 1학기부터의 전공 기초과목을 재이수해야 한다.
- ② 치의예과 학생은 수료에 필요한 영역별 학점을 2학년 2학기까지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급되며, 해당 영역별 학점을 재이수해야 한다.
- ③ 치의학과 학생은 해당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경우 또는 배정된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유급되며, 해당 학년에 이수한 모든 학점이 무효가 되고 이를 재이수해야 한다. 다만, 유급으로 재이수하는 과목의 성적 등급은 제한하지 않는다.
- ④ 치의학과 재이수는 학년 단위로 하며, 유급은 재학기간 중 치의예과는 두 번, 치의학과는 세 번으로 한정한다.